

##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

-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,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(하심위, 위원장 채한식)\*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.
  - \*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과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
  -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,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  - 이에, 국토교통부는 '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.
-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, 하심위에서는 '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,000여건의 하자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\*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중 90%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, 나머지는 분쟁조정·재정\*\* 등에 해당한다.
  - \* ('19) 3,954건, ('20건) 4,173건, ('21건) 4,717건, ('22건) 4,370건, ('23.8) 3,096건
  - \*\* 조정 :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(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)  
재정(裁定) : 준사법적 형식.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(60일 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)
  -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(10,706건)중 실제 하자과 판정받은 비율은 60.5% (6,481건)이며,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, 누수, 주방후드·위생설비 기능불량, 들뜸 및 탈락 결로, 오염 및 변색 등이다.
  -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,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(미보수자 과태료 1,000만원 부과 등)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희령 과장은 “하자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,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	책임자	과 장	유혜령 (044-201-3364)
		담당자	사무관	민경철 (044-201-4897)



## 참고1

#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

### □ '19 ~ '23.8월까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 년도	대상건수			처리건수									
	신청 건수	조정· 재회부	전 년월	계	하자심사		분쟁조정·재정			재심의		각하	취하
					판정	조정 회부	조정 성립	조정 결렬	재정서 교부	이의 기각	이의 인용		
2019	4,290	6	1,566	3,954	2,217	6	106	30	-	10	8	137	1,440
2020	4,245	2	1,908	4,173	2,627	2	93	31	-	6	7	215	1,192
2021	7,686	6	1,982	4,717	2,784	6	148	50	-	32	3	81	1,613
2022	3,027	1	4,957	4,370	1,591	1	76	34	3	26	11	1,197	1,431
2023.8	1,932	9	3,615	3,096	1,368	8	30	36	10	14	2	599	1,029

### □ '19 ~ '23.8월까지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

(단위 : 건)

연도	구분	판정서 교부 건수	하자 판정 건수 (비율)
2019	하자심사	2,217	1,128 (50.9%)
	재심의	18	3 (16.7%)
	소계	2,235	1,131 (50.6%)
2020	하자심사	2,627	1,297 (49.4%)
	재심의	13	5 (38.5%)
	소계	2,640	1,302 (49.3%)
2021	하자심사	2,784	1,899 (68.2%)
	재심의	35	1 (2.9%)
	소계	2,819	1,900 (67.4%)
2022	하자심사	1,591	1,147 (72.1%)
	재심의	37	1 (2.7%)
	소계	1,628	1,148 (70.5%)
2023. 8.	하자심사	1,368	1,000 (73.1%)
	재심의	16	- (0%)
	소계	1,384	1,000 (72.3%)
합계		10,706	6,481 (60.5%)

※ 연도별 사건 종결 기준으로 집계함

※ 하자심사 사건은 '판정서 교부', 이의신청(재심) 사건은 '재심의결정서 교부' 건수를 집계함

□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

하자유형	2019	2020	2021	2022
균열	18.7%	9.4%	8.5%	3.4%
누수	7.7%	6.5%	4.6%	5.1%
기능불량 <sup>주1)</sup>	13.3%	9.6%	11.8%	4.3%
들뜸 및 탈락 <sup>주2)</sup>	8.9%	7.5%	16.0%	4.9%
결로	6.7%	8.0%	13.2%	3.5%
오염 및 변색	10.4%	6.1%	5.9%	2.4%
파손	4.1%	3.9%	5.2%	1.9%
설계도서 상이시공	1.9%	6.6%	1.1%	2.4%
부착접지불량 <sup>주3)</sup>	5.6%	3.0%	0.6%	0.4%
기타 <sup>주4)</sup>	22.7%	39.4%	33.1%	71.7%

주1) "기능불량"은 조명, 주방후드, 인터폰,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

주2) "들뜸 및 탈락"은 타일, 도배, 바닥재,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

주3) "부착접지불량"은 조명, 에어컨,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

주4) "기타"는 침하, 고사, 소음, 악취, 누출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

□ '19 ~ '23.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

(단위 : 건)

순위 <sup>1)</sup>	건설사	하자심사 접수		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		진행중
		사건수 <sup>2)</sup>	세부하자수 <sup>3)</sup>	사건수 <sup>4)</sup>	세부하자수 <sup>5)</sup>	
1	지에스건설(주)	759	3,062	372	1,612 (52.6%)	158
2	계룡건설산업(주)	229	955	151	533 (55.8%)	22
3	대방건설(주)	198	967	105	503 (52.0%)	41
4	에스엠상선(주)	270	726	206	402 (55.4%)	40
5	(주)대명종합건설	180	1,430	59	361 (25.2%)	10
6	디엘이앤씨(주)	271	743	154	323 (43.5%)	13
7	(주)대우건설	446	1,274	97	308 (24.2%)	295
8	동연종합건설(주)	115	448	87	251 (56.0%)	0

순위 <sup>1)</sup>	건설사	하자심사 접수		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		진행중
		사건수 <sup>2)</sup>	세부하자수 <sup>3)</sup>	사건수 <sup>4)</sup>	세부하자수 <sup>5)</sup>	
9	두산건설(주)	410	1,347	101	213 (15.8%)	25
10	롯데건설(주)	351	800	101	202 (25.3%)	86
11	효성중공업(주)	167	507	69	193 (38.1%)	45
12	중흥토건(주)	621	2,088	86	191 (9.1%)	33
13	현대건설(주)	230	598	60	170 (28.4%)	81
14	주식회사 엘로이종합건설	108	365	77	163 (44.7%)	0
15	(주)삼정기업	59	238	52	160 (67.2%)	10
16	(주)한양	200	505	93	146 (28.9%)	114
17	(유)신호건설산업	145	322	92	143 (44.4%)	106
17	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(주)	443	1,774	57	143 (8.1%)	45
19	제일건설(주)	143	417	58	133 (31.9%)	69
20	(주)대성종합건설	24	149	22	132 (88.6%)	0

1)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

2) 사건수 :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

3) 세부하자수 :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(전유부분은 최대 10개)

4) 사건수 :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(예; 1사건중 하자 3개,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)

5) 세부하자수 :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(예; 1사건중 하자 3개,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)

※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내 ( )는 하자심사 접수된 세부하자수 대비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비율임

※ `18~`23.8.에 하자심사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세부사건에 대해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제일 많은 상위 2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계[하자심사 이의신청(재심의)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]

※ 진행중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순위 및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달라질 수 있음

※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

-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(주) : 현대산업개발(주)를 포함한 자료임
- 에스엠상선(주) : (주)우방, (주)우방건설산업, (주)SM우방을 포함한 자료임
- 디엘이앤씨(주) : 대림산업(주)를 포함한 자료임
- 금호건설(주) : 금호산업(주)를 포함한 자료임

□ `23. 3. ~ 8월까지 판정받은 사건 중 세부하자수가 많은 20개사 현황

(단위 : 건)

순번 <sup>1)</sup>	건설사	하자심사 접수		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		비고
		사건수 <sup>2)</sup>	세부하자수 <sup>3)</sup>	사건수 <sup>4)</sup>	세부하자수 <sup>5)</sup>	
1	지에스건설(주)	49	171	20	93	
2	(주)상명종합건설	35	138	31	80	
3	건곤(주)	11	79	11	65	
4	에쓰와이이앤씨(주)	9	86	9	62	
5	대양종합건설(주)	10	73	9	46	
6	(주)수진종합건설	16	63	13	45	
7	(유)신호건설산업	33	47	32	41	
7	(주)대우주택	22	85	22	41	
7	(주)우방	6	53	6	41	
10	(주)정우종합건설	11	49	11	39	
11	(주)동광주택	37	37	37	37	
12	(주)동원개발	12	70	8	36	
13	롯데건설(주)	24	78	8	35	
14	현대건설(주)	81	114	20	33	
15	(주)호반건설	20	89	12	31	
16	(주)대명종합건설	104	874	4	28	
17	(주)시티건설	14	78	7	27	
17	(주)와이레노베이션	31	50	18	27	
19	에스엠상선(주)	13	58	5	26	
20	중흥건설(주)	11	40	6	22	

1)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

2) 사건수 :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

3) 세부하자수 :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(전유부분은 1사건당 최대 10개)

4) 사건수 :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(예; 1사건중 하자 3개,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)

5) 세부하자수 :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(예; 1사건중 하자 3개,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)

※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

□ 설치목적

-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여 신속·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입주자 주거안정 달성과 법원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

□ 설치근거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9조 (’09. 3. 22. 설치)

□ 주요임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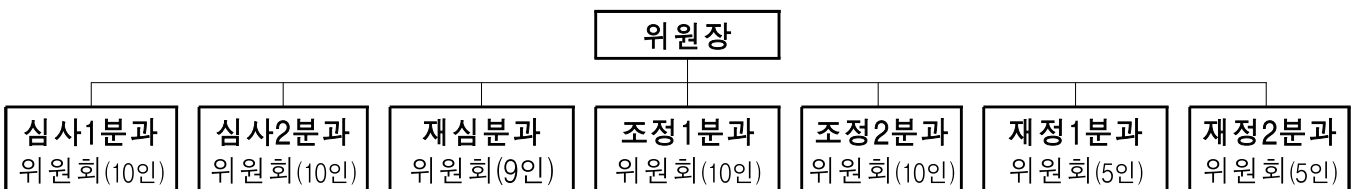
- (하자여부 판정) 내력구조부별, 시설공사별 하자판정(과태료 부과)
- (분쟁조정\*·재정\*\*)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·하자보수보증서 발급 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 등·임차인간, 사업주체등, 설계자 및 감리자간 분쟁의 조정·재정(재판상 화해의 효력)

\* 조정 :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(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)  
 \*\* 재정(裁定) : 준사법적 형식·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(60일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)

- (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) 하자 판정 후 전문가 의견(변호사, 건축사, 기술사 등)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 사건의 재심의
-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(집합건물 하자판정 등)

□ 위원회 구성 및 사무업무 수행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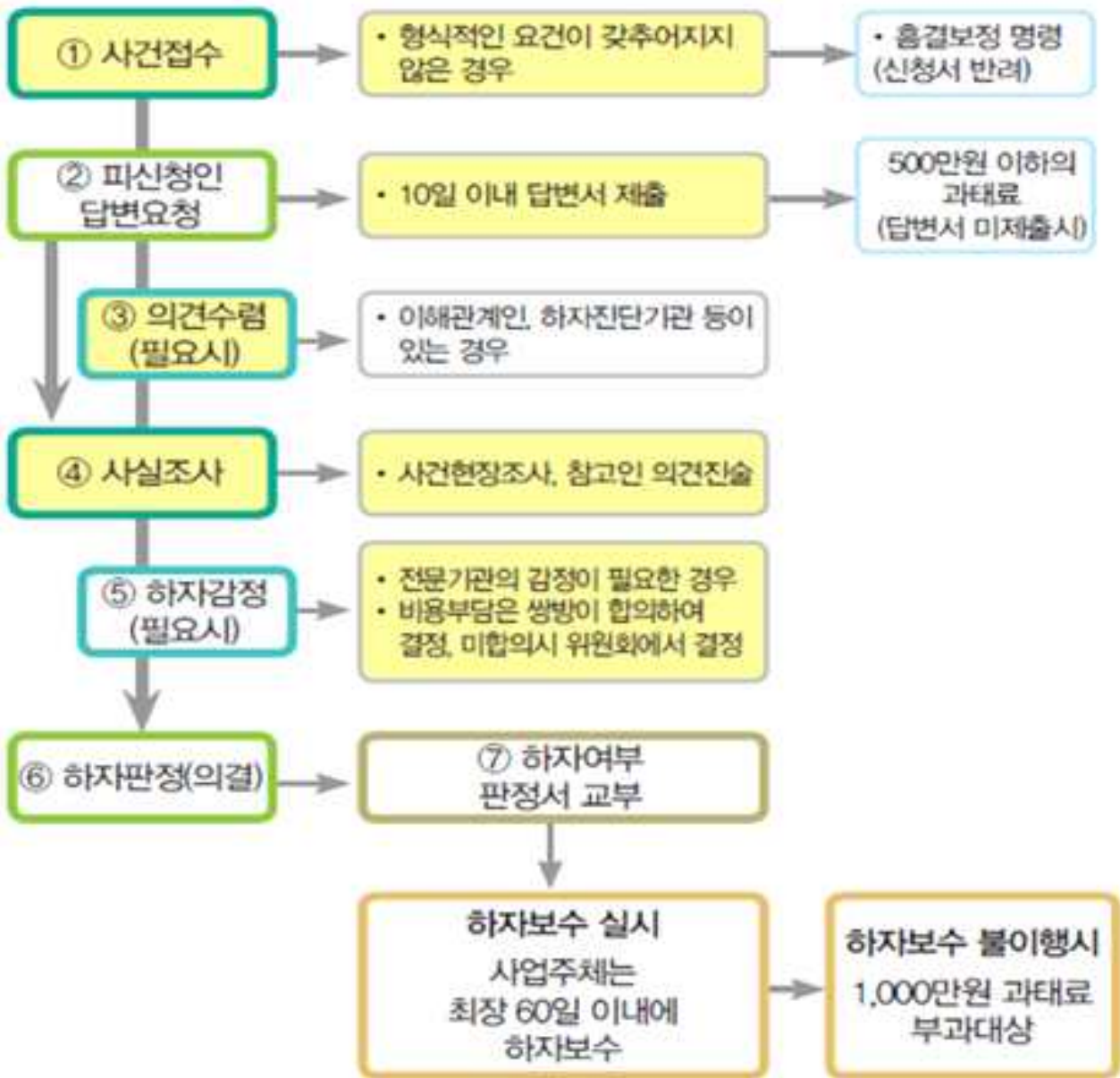
- 위원회 구성 : 정원 60명(본회의, 7개 분과위원회, 12개 소위원회)



- 사무업무 : 국토안전관리원 위탁

## □ 처리절차도

### • 하자심사 절차



※ 하자심사기간:전용부분 -60일 (30일 연장가능), 공용부분 -90일(30일 연장가능)  
(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)

당사자(신청인, 피신청인)가 작성 또는 참여해야하는 부분